



제344회 정례회

2015.11.25.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이 광 희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15년 11월 04일

○ 회부일자: 2015년 11월 05일

3. 제안이유

충청북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한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등에 대한 정의를 명시함(안 제2조)

나.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3제조)

다.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라. 학생이 휴식을 취할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

마. 학습에 적절한 조명과 통풍, 냉·난방 등 학습 환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바.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제한사항에 관한 학생·학부모의 청원 권리를 명시함(안 제7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한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3조에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을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로 명시하였고,
- 안 제4조에는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고, 자율적 선택으로 인하여 어떠한 유·무형의 불이익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는 정규교육과정외학습으로 인한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안 제6조에는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학습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였고,
- 안 제7조에는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제한 시, 학생과 학부모가 충청북도교육청이나 학교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였음.
- 본 조례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한 학생의 자율적 선택과 책임이 강화됨으로써, 정규교육과정외학습 활동에 대한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와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환경으로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초·중등 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14.]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